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

제 목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2015-5호(2015. 12. 30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는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4항제5호,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[별표 1] 제3호가목, 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 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.

붙임 :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메뉴 상단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김재현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5-656 (2015.12.30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jh@kha.or.kr